#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5 발의연월일: 2024. 6. 5.

발 의 자:김성원・이종배・안상훈

이인선 • 박충권 • 김태호

임이자 · 송석준 · 김종양

김소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 원전의 적기 계통 접속,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력 수용 등 국가에너지 믹스의 이행을 위해서는 전력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한 상 황임.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신규투자의 성공은 장거리 송전망 신설을 포함한 수도권 대규모 전력공급 특단 대책 마련이 핵 심이라 할 수 있음.

핵심 기간망 구축 지연시 발전소 가동제한 등으로 인한 전력수급 불안정 증대 및 사업자들의 수익악화로 전력산업 생태계 위축이 전망 되며, 또한 24시간 안정적 전력공급이 필요한 철강·석유화학 등의 국 내 핵심제품 생산지에 계통불안정으로 정전 발생시 최소 수십억의 피 해 발생이 우려되는 등 전력산업 생태계 및 국가산업 전반에 악영향 이 예상됨. 반면, 독일,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 선진 각국은 전력망 투자를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중요 전력망 신속 확충을 위해 과감한 제 도개선에 나서고 있음.

이에 국가·경제·안보 및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전력망적기 구축을 위해 ①국가기간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②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며, ③현행 타 법들과 차별화된 보상·지원 제도를 통해 국민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정책적·제도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이 가능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부문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여 전 기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송·변전설비"란 송전탑, 송전선로, 변전소 등 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2.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34만 5 천볼트 이상인 송·변전설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설비 중 이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받은 설비를 말한 다.
  -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변전설비
  - 나.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자력을 사용하여 생산

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 · 변전설비

- 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변전설비
- 3.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국가 기간 전력망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과 이와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4.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확충 과 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전원개발촉진법」을 따른다.
- 제5조(보안관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

는 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구역과 관련한 미공개정보(자산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 1. 산업통상자원부
- 2.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 3. 제11조에 따라 협의하는 관계 행정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 제2장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 제6조(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①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이하 "전력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전력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지정에 관한 사항
  - 2. 제8조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 등 갈등중재에 관한 사항
  - 3. 제8조제2항에 따른 공동개발계획 등에 관한 사항
  - 4.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변경, 취소에 관한 사항

- 5. 개발사업과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6. 개발사업과 관련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 7.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전력망위원회 위원장이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력망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사항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전력망위원회는 제2항과 관련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점검·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의 권한 조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인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전력망위원회 구성·운영) ① 전력망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2항제 2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간사위원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② 전력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당연직위원: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가유산청장, 산림청장, 「지방자치법」 제182조

- 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 2. 위촉위원: 에너지·자원, 환경·해양환경, 산림, 수산업, 국토이용, 과학·기술, 갈등조정, 전력설비 개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및 국회 소관 상임위 위회가 추천하는 사람
- ③ 전력망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은 전력망위원회를 각자 대표한다.
- ⑤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① 전력망위원회는 사업심의, 분쟁조정, 기술자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망위 원회의 위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⑧ 그 밖에 전력망위원회의 구성·운영, 전문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

- 제8조(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의 자료 요구 및 협조 요청 등에 성설히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입지선정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개발사업과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할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시설의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반대, 관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등의 사유로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입지선정이 곤 란 또는 사업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산업 통상자원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보고 받은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은 입지선정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조정 중재 및 해결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장 개발사업 실시계획

- 제9조(사업시행자) 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 전사업자가 시행한다.
- 제10조(기초조사) ① 사업시행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해 제8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개요
  - 2.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구역(이하 "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의 위치 및 면적
  -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4. 개발사업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 5.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와 관련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 6.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 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협의에 필요한 서 류
- 3.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인허가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 4.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의 피해보상에 관한 서류
-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 어업권, 양식업권(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보상이나 매수계획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6. 그 밖에 개발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 링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17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할 때 한꺼번에 신고하여 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력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실시계획 중 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야 하다.
- ⑤ 제4항에 따라 의견요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협의에 관한 의견을 말한다)을회신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⑥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 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 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3

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8 제7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할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등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토지등의 수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을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실시계획이 변경되어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① 제1항부터 제9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실시계획의 수립, 신청 및 승인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실시계획의 공고・열람 및 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사업시행자

는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열람기간 내에 설명회를 통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 2. 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실시계획의 사업면적 또는 선로의 길이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주민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공사중지, 공사개선 등을 명하거나 그 밖

- 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로서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허가 등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기존에 수립·변경되었던 실시계획 등은 해당 실 시계획이 승인되기 전의 상태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에 대하여 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평가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내에 통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1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을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 2회 이하로 조사할 수 있다.
- 제15조(「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 특례)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4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 협의만을 실시한다.
  - ②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20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내에 통보가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조정 요청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다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이 아니거나 협의시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다.
-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1조

- 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신고·지정 또는 결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등록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제7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에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 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 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 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

- 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6.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 수도 설치의 인가
- 7.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 8.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국유림의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 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1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 1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 15.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 17.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 18.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19. 「습지보전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승 인
- 20.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 치·관리의 허가 또는 신고
- 2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위한 사전협의
- 2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 2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 2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 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등
- 2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 2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 27.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2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 ②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신청할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거나 의견청취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11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17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명칭, 종류, 위치 및 사용 개시일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고시를 한 경우 제16조제1항 각 호의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확인,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⑥ 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준공확인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항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개발사업 용지의 취득·사용과 보상절차 및 관련업무의 위탁 등

제18조(토지등의 사용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성립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대금의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전을 토지대금에 가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전을 토지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 금 또는 분할지급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19조(토지보상 협의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 업무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도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위 탁할 수 있다.
- 제20조(토지등의 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 포함된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1. 지방자치단체
  - 2.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특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송전사업자는 개발사업 지역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장 개발사업 주변지역 및 사업시행자 등의 지원

- 제22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는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주민 지원 사업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① 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등의 소유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 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원활한 사업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한다.
  - 1.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출자 시 투자 및 융자 지원

- 2.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7장 보칙

- 제24조(정보공개) 사업시행자는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정보를 개발사업구역의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25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 는 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26조(권리·의무의 승계) 개발사업구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권리자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이 법에 따라 종전의 권리자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정조치는 변경된 권리자등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2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사업에 관하여 추진공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조건 이행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 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검사계획 사전 통지로 증거인멸 등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사전통지 및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취소 또는 변경승인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 2. 제7조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 제8장 벌칙

- 제31조(벌칙) ① 제5조를 위반하여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구역에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보를 아는 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 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정한다.

-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0조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2. 제2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 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에 따라 입지선정을 진행중인 사업이 이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본 다.